



**[판례번호]무호(상표) 2001.11.27.
대법원 2000후1481 판결**

[판시사항]

[TD0304] 등록상표 “도형 + Legaccess”와 인용상표 “폴로도형”는 비유사하다.

[TD322.1]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도형부분이 보통으로 불려지는 자연적 호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심은 ‘말 탄 사람’으로 호칭된다고 하나, 이는 그 도형을 설명하기 위해 문장화한 것이지 보통으로 불려지는 그 도형의 자연적 호칭은 아니다) 문자부분에 의하여 ‘레가세스’로 호칭된다고 보여진다.

[원고 피상고인]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 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0인

[피고 상고인] 흥재명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용환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6. 9. 선고 2000허19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Legaccess”라는 문자부분과 말 탄 사람의 도형부분이 결합된 상표로서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은 거래상 분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고 문자와 도형이 결합하여 어떠한 새로운 관념이나 의미를 창출해내지도 아니하므로 각 부분을 분리 관찰할 수 있고, 그 각 부분은 모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요부로 인식될 것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과 인용상표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창과 방패를 하나씩 든 모습을 간략하게 그린 것으로 말 탄 사람의 모습이 인용상표와 약간 다르기는 하나, 말 한 마리를 타고 있는 사람 한 명이 도형의 주된 소재가 되고 있는 점, 말의 방향이 동일한 점, 표현의 간략화의 정도가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외관상 유사할 뿐만 아니라, ‘말 탄 사람’이라는 호칭이나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이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도형부분이 보통으로 불려지는 자연적 호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심은 ‘말 탄 사람’으로 호칭된다고 하나, 이는 그 도형을 설명하기 위해 문장화한 것이지 보통으로 불려지는 그 도형의 자연적 호칭은 아니다) 문자부분에 의하여 ‘레가세스’로 호칭된다고 보여지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창과 방패를 든 채 말을 타고 있는 기사’의 관념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인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호칭이 없고(다만, 인용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지저명한 폴로의 도형상표로서 ‘폴로’상표로 호칭될 여지가 있다), 관념에 있어서도 단순히 ‘말을 탄 사람’ 또는 ‘말을 탄 폴로경기의 선수’ 정도로 인식될 뿐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은 창과 방패를 든 채 말을 타고 있는 기사의 모습인 데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막대기를 들고 말을 탄 채 돌진하고 있는 사람 또는 폴로경기용 스틱을 든 채 앞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폴로경기 선수의 모습인 차이가 있어서 외관에 있어서도 일반 수요자

나 거래지는 양 상표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하여 관찰할 때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인용상표와 공존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데에는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배기원(주심)
대법관 박재운

하여 정량적 내지 수치적으로 제시해야만 비로소 발명의 효과를 당업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8. 19. 선고 98허107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의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이하 '당업자'라 한다)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 특허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허거절사정의 사

**【판례번호】 거절사정(특) 2001.11.13.
대법원 99후2396 판결**

【판시사항】

【PD1304】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이하 '당업자'라 한다)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PD1338】 의약발명의 기재불비 : 온단세트론과 텍사메타손을 병행 투여한 경우 온단세트론의 제토 효과보다 상승된 제토 효과를 가지는 약리기전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위의 각 물질이 각별로 가지는 제토효과보다 어느 정도의 상승된 제토효과를 가지는가를 비교례 등을 통



유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후654 판결, 1996. 6. 28. 선고 95후95 판결, 1997. 7. 25. 선고 96후2531 판결, 1999. 7. 23. 선고 97후24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의약제에 관한 발명인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제약 조성물의 제토제(制吐劑)로서의 용도에 관한 발명으로서 약리효과와 관련하여 그 출원명세서에 “1, 2, 3, 9-테트라히드로-9-메틸-3-[(2-메틸-1H-이미다졸-1-일)메틸]-4H-카르바졸-4-온 화합물(이하 ‘온단세트론’이라 한다)의 제토 특성은 텍사메타손과 함께 투여하였을 때 증강됨을 알게 되었다.”라는 기재만이 있을 뿐이고 약리데이터의 기재는 전혀 없는바, “온단세트론의 제토 특성이 증강되었다.”는 기재는 온단세트론과 텍사메타손의 제약 조성물의 약리효과로서는 매우 추상적인 기재에 불과하여 약리데이터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토제로서 공지된 물질인 온단세트론과 텍사메타손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병행 투여하였을 때 각 물질이 가지는 제토효과보다 상승된 제토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발명의 요지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경우에는 온단세트론과 텍사메타손을 병행 투여한 경우 온단세트론의 제토 효과보다 상승된 제토 효과를 가지는 약리기전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위의 각 물질이 각별로 가지는 제토효과보다 어느 정도의 상승된 제토효과를 가지는가를 비교례 등을 통하여 정량적 내지 수치적으로 제시해야만 비로소 발명의 효과를 당업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제토제로서 이미 공지의 물질인 온단세트론과 텍사메타손 각각의 일

반적인 투여량이나 방법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온단세트론과 텍사메타손의 각 성분의 배합비율이나 투여량과 투여횟수의 근거 또는 치료효과와의 상관관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업자가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실시례에는 이 사건 제약 조성물을 제토제로서 사용한 실시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단세트론과 조성물의 제조 실시례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출원명세서에는 조성물의 투여형태, 투여량, 투여횟수, 투여방법, 투여경로, 제조실시례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당업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가령 이 사건 출원명세서에서 발명의 약리효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사 및 심판과정에서 약리효과를 뒷받침하는 시험성적데이터를 제출하였으므로 명세서의 기재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명세서 기재요건과 진보성 판단의 혼동주장과 특허청 심사기준의 모법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서에 내세운 판례는 사안이 달라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대법관 조무제(주심)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이강국

지하철 사고 이후 주목받는 야광타일

‘전기가 끊겨 칠흑같이 캄캄한 지하철이나 빌딩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타일 제조 전문업체 서울세라믹스(www.seoulceramics.co.kr)의 이용재 사장이 이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타일에 야광물질을 넣은 ‘슬라이트’를 개발한 것이 지난 97년. 밝기가 높고 잔광시간이 긴 야광물질을 찾아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을 다 뒤지고 다년 끝에 야광타일에 대한 특허까지 따냈지만 당시 시장의 싸늘한 반응으로 현재는 거의 사장되다시피한 기술이다.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장식품 정도로만 구워내던 서울세라믹스의 야광타일이 최근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세라믹스의 ‘슬라이트’는 타일에 화살표나 출구·비상구 표시 등으로 흙을 파서 축광물질을 넣은 뒤 도포를 씌워 다시 한번 더 구워 낸 특수타일. 이 사장은 “지하건축물이나 건물 내부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때 비상 탈출경로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축광성질을 이용한 야광타일 뿐”이라며 “유럽국가들은 94년부터 축광재료를 이용한 비상탈출경로를 표시하도록 건축법에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슬라이트’가 유럽제품보다 2~3배 더 밝기를 유지하고 야광제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잔광시간도 8시간정도 지속돼 경쟁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포제를 입혀 마모성이 일반타일보다 2.5배로 뛰어나며 필요부분에 시공하면 물청소로만으로도 청결이 유지돼 수명이 반 영구적이라는 것. 이 사장은 “세라믹 제품이어서 화재시 불에 타버릴 위험성이 있는 일반 야광테이프나 스티커, 아크릴판과는 달리 화재와는 무관하다”며 “미적감각을 살려 장식용 타일이나 도로 주행선 표시로도 사용할 수 있는 등 활용분야가 매우 크다”

고 말했다. 이 사장은 85년에 서울세라믹스를 설립해 18년동안 석재타일과 수영장용 모자이크타일만을 전문으로 제조해 수출에만 전념해왔다.

미국 수용장용 타일 시장의 10%를 공급하고 내수 시장을 합쳐 작년에는 매출 100억원을 올렸다. 이 사장은 97년부터 기능성 타일 개발 연구에 몰두해 현재 항균타일, 야광타일, 메탈릭타일 등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

전남대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무독성 생물농약 개발

전남대 지연태(51·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공학부), 정순주(53·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식물학부) 교수팀은 (주)NIN(대표 김희경)과 함께 5년여의 연구 끝에 최근 방제효과는 기존 화학농약보다 우수하면서 독성과 내성은 전혀 없는 천연무독성 농약을 개발했다. 이 농약은 이미 작물안전성 검사까지 마치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29개국에 특허 출원중이다.

이 농약은 먹으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기존 농약과 달리 농약 잔류나 내성이 없고, 안전성이 검증돼 인체에 무해하며 골프장 등에서도 무농약 관리가 가능해져 차세대 친환경 제제로 각광받게 될 전망이다.

지교수팀이 개발한 무독성 농약은 천연물을 이용해 만든 생물전환제제로 단백질원 및 식물성 지방산을 원료로 사용해 항균, 항충 효과가 뛰어난 물질만을 추출, 나노입자화한 것으로 기존 농약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500~1천배 범위로 1회 생물에 살포한 결과 모든 곰팡이균을 사멸시키고, 응애와 진딧물의 경우 하루 이내에 90% 이상 방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교수는 설명했다.

출처 무명일보

한솔BM특허소송, 시민단체 가세로 '확진' 조짐

한솔CSN과 인터넷쇼핑몰 업계간 법정분쟁이 일고 있는 BM특허 무효 공방에 시민단체가 가세,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상의 독점을 허용하는 BM특허에 반대해 온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가 특허청에 한솔BM특허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 이번 특허 취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진보네트워크는 이전에도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관련 BM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어 이번 한솔BM사태의 새 변수가 될 조짐이다.

더욱이 지난달 한솔BM특허에 반발, 무효심판을 청구한 LG이숍을 비롯 9개 업체는 최근 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 이유에 대한 자료 보정을 요청 받은 상황이어서 이번 시민단체 등장이 국면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공유연대(www.ipleft.or.kr)와 진보네트워크(www.networker.jinbo.net)는 성명서를 통해 한솔측 BM특허가 특허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이의 등록 취소를 주장하고,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한솔측 특허는 통상 제휴 마케팅(Affiliate Marketing)이라 불리는 영업 방법으로 이미 많은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이라며 “한솔CSN 특허 출원 시점인 99년 이전부터, 아마존 등 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사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휴 마케팅에 관한 디렉토리 서비스까지 존재, ‘신규성’이라는 특허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일반화된 영업 방법을 특허로 인정한 국내의 부실 특허심사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공유연대는 “특허권의 범위가 광범위해 지나친 독점을 보장하고 있어 이를 한솔CSN이 독점케 하는 것은 인터넷 발전을 가로막고 로열티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네트워크와 정보공유연대는 한솔CSN의 특허 취소와 함께 BM 특허에 관한 현행 심사 기준 개정 촉구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inews24

하이닉스, 램버스와의 실용신안 소송서 승소

하이닉스반도체가 램버스사를 상대로 한 실용신안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독일 특허청은 최근 하이닉스와 인피니온, 마이크론테크놀러지사가 공동으로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독일 실용신안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당 실용신안의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를 비롯한 3사는 앞으로 SD램 및 DDR SD램에 관해 램버스가 지난 2000년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 제출한 특허 침해 소송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독일 특허청은 판결문에서 “독일 실용신안이 ‘실용신안의 권리 범위가 원 출원의 내용보다 확대 청구되어서는 안된다’는 독일실용신안법 15조 1항에 해당돼 무효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램버스의 유럽 특허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특허 권리 범위 축소 결정을 얻었으며 램버스는 이에 대해 항소중이다.

출처 연합뉴스

후불교통카드 특허 취소 되듯

스마트카드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후불 교통카드 특허권 문제가 공동 특허권자인 국민카드가 불복심판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특허취소'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일 특허취소가 결정될 경우 국민카드를 제외한 다른 카드사들이 교통카드 발급을 위해 씨엔씨엔터프라이즈에 장당 500원씩 지불하던 특허료를 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지급한 특허료의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씨엔씨엔터프라이즈와 국민카드가 공동으로 특허권을 갖고 있는 '비접촉식 무선인식 신용카드시스템', 즉 후불교통카드 기술에 대해 특허청이 특허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불복 시한인 28일까지 씨엔씨측만 불복심판을 청구했고 국민카드는 이를 포기했다.

특허법상 특허권리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불복심판 청구는 권리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 씨엔씨의 단독 청구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또 이 같은 규정은 특허심판원 뿐 아니라 특허법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씨엔씨측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허심판원 한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불복심판 청구는 특허권리자 전원이 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청구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보정기회'가 주어지는 '결정각하'나, 아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심결각하'가 내려지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씨엔씨측은 "국민카드와의 합의에 실패, 최근 단독으로 불복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특허심판원에서 각하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렇더라도 특허를 살리기 위해 특허법

원,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씨엔씨측은 또 "대법원 판례에서 공유특허에 대해 1인만의 심판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승산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카드측은 "불복심판 청구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후에도 씨엔씨와 공조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국민카드는 7개 카드사와 정면 대치하면서까지 특허권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씨엔씨측과 국민카드가 2001년 1월 취득한 후불 교통카드 특허에 대해 7개 카드사가 2001년 7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돼 특허청이 지난해 7월 7개 카드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허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후 씨엔씨측에 3차례의 특허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씨엔씨가 제출기일을 지키지 않아 지난달 28일 특허취소 결정을 내렸다.

출처 디지털타임즈

인텔-비아 특허분쟁 일단락

미국 반도체 업체인 인텔과 대만의 비아 테크놀로지 사이에 벌어졌던 특허 분쟁이 1년 6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C넷은 인텔과 비아가 10년간의 크로스 라이선스(상호 특허 교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난 2001년 9월이래 벌였던 모든 특허 소송에서 합의를 봤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양사가 5개국에 걸쳐 진행했던 11건의 특허관련 소송이 모두 매듭지어졌다.

인텔은 지난 2001년 9월 비아의 칩셋과 프로세서가 명백히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으며 비아는 이같은 제품을 생산할 특허권이 없다며 특

허소송을 제기했다. 비아측은 이에 대해 인텔의 펜티엄 4 프로세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고소로 대응했다. 특허법에 따르면 비아의 칩을 사용했던 다른 PC업체들도 같은 맥락에서 소송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동안 판매량 하락으로 고전을 겪었다. 따라서 비아는 이번 합의로 프로세서와 칩셋 생산 및 판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텔은 이번 합의에서 VIA 제품과 인텔 제품의 호환성을 차단함으로써 비아 제품의 시장 확장을 막았다.

합의에 따르면 비아는 노트북PC·데스크톱용 칩셋 및 프로세서인 'x86 컴패터블'을 생산할 수 있으나 이 회사가 독자 개발한 버스와 핀 스트럭처를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버스는 중앙 처리 장치(CPU), 비디오 카드, 각종 입출력 장치, 주변 기기 사이에 주고받는, 정보가 전달되는 정보의 통로 또는 전송로를 말한다. 핀 호환(pin compatible)은 CPU 등의 칩에 나와 있는 접속용 핀이 다른 제조 회사 제품과 같은 것을 뜻한다.

따라서 독자 개발한 버스와 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인텔 제품과의 호환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비아 제품이 인텔 프로세서에서 구동되지 못한다는 건 이 회사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C넷은 합의 결과에 대해 비아가 또다시 인텔의 프로세서와 경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번 일을 기회로 독자 기술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번 합의는 인텔과 AMD간 합의 결과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한편 두 회사간 분쟁의 역사는 지난 199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사는 비아가 만든 펜티엄 3 칩셋 때문에 분쟁을 벌였다. 인텔은 이 회사가 특허없이 칩셋을 제조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비아는 소송이 경쟁을 탄압한다며 이에

반발했다. 당시 인텔은 고객인 PC업체들에게 스탠더드 메모리 대신 램버스 메모리를 채택하라고 압력을 가한 반면 비아의 칩셋은 스탠더드 메모리와 호환된다는 장점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을 높혀 나갔다.

출처 디지털 타임스

윙실업, 美대기업 상대 특허권 침해 소송서 승리

국내 중견기업이 미국 대기업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판매중지가처분 결정을 얻어냈다.

모자생산업체인 윙실업은 최근 미국의 모자회사인 H&C헤드웨어를 상대로 제기한 모자관련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으로부터 판매중지가처분결정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H&C헤드웨어 제품인 "누피트(NuFit)"의 신축섬유 커버와 신축밴드가윙실업이 지난 1998년 등록한 신축밴드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 물질적 손실을 입힌 만큼 신규제조를 중단하고 현재 판매되는 제품을 전량 회수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앞서 윙실업은 H&C헤드웨어의 누피트에 대해 특허침해소송과판매중지가처분신청을 연방법원에 냈었다. H&C헤드웨어는 미국 모자시장의 2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으로 국내 업체가 미국 대기업을 상대로 판매중지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윙실업은 지난 1974년 설립된 모자 전문업체로 6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천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출처 한국경제

‘삼페인’ 명칭 知財權 논쟁

국내 유일의 삼페인 브랜드가 지적재산권 논쟁에 휘말려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주한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최근 재정경제부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갖고 국내 주류 업체가 ‘삼페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요청했다. 이들은 “삼페인은 ‘프랑스 상파뉴 지방에서 나는 포도로 만든 발효주’를 의미한다”며 “삼페인은 소비자들이 그 자체를 지역 명칭과 일체가 된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어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정(TRIPs)”은 지역 명칭에서 유래된 브랜드를 ‘지리적 표시’로 규정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최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6년 10월 TRIPs 협정에 가입한 이후 국제청 고시를 통해 해태산업의 “부라보 삼페인” 등 10여 개의 브랜드를 없앴지만 “오스카 삼페인”은 아직 남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 명칭과 관련된 브랜드를 새로운 지적재산권으로 적극 수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오스카 삼페인은 ‘선의로 10년 이상 사용해온 브랜드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조항에 해당하는데도, EU가 마지막 남은 국산 삼페인마저 없애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출처 한국일보

커뮤니티 자동생성 솔루션 특허권행사 분쟁 가열

인터넷 서비스 솔루션업체인 로커스디지털서비스(대표 신철균 · www.locusds.com)의 “인터넷 커뮤니티 자동생성 솔루션” 특허를 둘러싸고 관련업체 간 특허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로커스디지털서비스가 오는 5월부터 특허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다모임(대표 이규용 · www.damoim.net)과 아이러브스쿨(대표 현명호 · www.iloveschool.co.kr) 등 커뮤니티업체들이 선사용권과 특허무효소송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특허는 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 가입시 주소나 출신학교등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커뮤니티에 등록되거나 신규로 생성해주는 것이다.

로커스디지털서비스는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5월 17일 이후 다모임 아이러브스쿨 등 대부분의 커뮤니티업체들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할 계획”이라며 “특허료는 특허 출원 시점인 지난 2000년 4월로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모임과 아이러브스쿨 등 커뮤니티 서비스업체들은 로커스디지털서비스의 특허 내용이 자신들의 서비스 내용과 차이가 있고 서비스 시기도 특허 출원 시기보다 앞선다는 점을 들어 선사용권을 주장하고있다.

로커스디지털서비스보다 앞서 비슷한 솔루션의 특허를 출원했다가 거절결정을 받은 다모임은 신규로 특허를 출원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다모임은 “로커스디지털서비스가 취득한 특허와 다모임의 서비스를 ‘동일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허권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 등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러브스쿨도 “이달 중 이의신청과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커스디지털서비스 측은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솔루션을 이용한 인터넷상의 영업방법(Business Method)에 관한 특허로 특허권주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서 특허분쟁 시비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출처 내외경제

WIPI...알고보니 美社 지적권 침해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미간 최대 통상 현안인 "한·미 통상협상"에서 한국이 외교적 망신과 함께 경제적 실리마저 잃게 될 위기에 빠졌다. 정부가 800억원을 쏟아 부어 국내 독자표준으로 개발했다는 무선인터넷기술이 알고 보니 미국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정보통신부와 외교통상부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 무선인터넷 운용플랫폼 표준으로 지정하려 해온 운영소프트웨어 "위피(WIPI)"가 미국 선 마이크로시스템스(이하 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 로열티협상이 진행중이다. 선은 위피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한국을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통부가 위피의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무시한 채 '표준기술'로 지정하려다가 USTR의 경고를 받은 뒤 최근 선과 로열티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로열티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단말기 1대당 30센트 정도 수준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통부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도

입 과정에서 미국 퀄컴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퀄컴이 개발한 "브루(Brew)" 대신 국산 기술인 위피를 국내 업체가 공동 개발토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통신협상에서 "위피를 기술 표준으로 정하는 것은 외국업체 차별"이라는 USTR와 퀄컴의 주장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토종기술 확보"라는 명분으로 맞서왔다.

그러나 위피가 "자바"(선이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 위에서 개발한 것이어서 선의 지적재산권을 일부 침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 빚어진 것은 협상 창구인 한국 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KWISF)에서 위피 제정을 주도해 온 정통부와 전자통신연구원(ETRI) 관계자들이 선의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한데다, 정통부가 협상창구인 통상 교섭본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출처 한국일보

수십억 달러가 걸려 있는 대학 특허 소송

새로운 종류의 "super aspirin"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로열티가 걸린 미국의 거대 제약 회사와 로체스터 대학(University of Rochester)간의 분쟁은 비록 이번 달 초 법원에서의 첫 대결에서 패소하기는 했지만, 로체스터 대학은 물러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로체스터 대학은 Donald Young 박사의 실험실 업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명한 법률 회사를 고용하였고, 1천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모금하였다. 동 분쟁은 의과 및 생화학 교수인 Young 박사가 염증을 일으키는 시클로-

옥시게나아제 효소(cyclo-oxygenase enzyme)인 cox-2를 집어낸 1990년부터 일기 시작하였다. 동 발견으로 아스피린(aspirin), 이부프로펜(ibuprofen) 및 다른 항염증제의 일반적인 사용에 수반되는 위험한 위장 장애 없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약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에 Young 박사의 연구에 대한 17년간의 특허를 획득한 대학은 소위 cox-2 억제 약품을 개발한 제약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1999년 관절염 치료제 Celebrex는 그러한 약품 중 최초로 시장에 판매된 것이었고, 작년 한해에만 31억 달러의 판매고를 올렸다.

올 3월 5일에 미 지방법원 David Larimer 판사가 관련 특허 무효를 판결했을 때, 제약 회사들은 법적 승리를 거두었다. 판사는 Young 박사의 치료 방법은 완전한 형태의 발명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고 동 사건을 특허 소송 전문인 워싱턴의 항소 법원으로 넘겼다. 만약 특허가 유지된다면, 로체스터대학은 3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에 이르는 로열티 및 수수료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에서 가장 이익이 남는 특허가 될 것이다.

출처 The Associated Press

대만의 VIA Technology, 미국의 Intel사와 마이크로프로세스와 관련한 특허 소송 화해

VIA Technology는 4월 8일 Intel과 27개의 특허를 포함한 5개국에서의 진행되고 있는 11개

의 특허소송에 대해서 화해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한 VIA의 시장을 넓힘과 동시에 제품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라이선싱 협정을 체결하였다. VIA는 핵심 "logic chipset"과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야의 선도적인 기술개발기업이며, 동 협약에 따라 18개월에 걸친 소송을 해결하였으며, 향후 10년간 미국의 Intel사와 협력하는 관계를 설정하였다.

협약에 따르면 VIA는 "X86 instruction set"와 호환성이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판매하는 라이선스를 intel로부터 허락받았으며, 인텔은 VIA의 bus 또는 pin과 호환성이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대해서 자사의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Intel은 또한 인텔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버스(microprocessor bus)와 호환성이 있는 chip set을 VIA가 디자인하고 팔 수 있는 4년간의 라이선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5년간 VIA 또는 VIA의 소비자 및 판매자에 대해 그러한 chip set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동 라이선스 계약은 VIA가 부분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S3 Graphic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협약에 따라 VIA는 대만기업으로서 최초로 Pentium4 chip sets와 Centrino platform chipsets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동협약이 체결되면서 VIA의 주식이 7%정도 상승하였으며, 반면에 경쟁회사인 SiS사의 주식은 7%정도 하락하였다.

출처 Taiwan Economic News